|  |  |  |
| --- | --- | --- |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정법[2016]7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  안전생산법 집행 행위를 진일보 규율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집행을 명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16년 7월 15일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법 집행 행위를 규율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장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안전생산법 집행이라 함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따라 안전생산(직업위생 포함, 아래도 같음)감독관리 직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행정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 집행정보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법 집행의 근거, 절차와 결과 등 사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제외하고 본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 집행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재량권의 행사는 입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치와 수단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고 적당하게 취해져야 한다. 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와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조치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법 집행과 관련된 사실, 이유, 근거, 법정(法定) 권리와 의무를 지체없이 당사자,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법 집행에 대하여 진술하고 해명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안전생산법 집행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행정법 집행문서> 양식을 사용한다.  제2장 안전생산법 집행 주체와 관할  제7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내에 설치된 기구 또는 파출기구는 대외적으로 법 집행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행정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률책임은 해당 부서가 부담한다.  제8조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 업무를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안전생산법 집행 직권을 행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후과는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그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위임을 받는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위임계약서에는 위임근거, 위임사항, 권한, 기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법률책임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법 집행 엄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사항, 권한, 기한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이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행위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법 집행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받은 사항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기타 행정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위임을 해제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임기한이 만료된 경우;  (2) 위임받은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행정 직권을 초월, 남용하였거나 행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임받은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더 이상 해당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위임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1조 법률•법규와 규장에 안전생산법 집행의 지역 관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리 사항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되 개인에 대한 자격 허가 사항과 연관된 경우에는 행정관리 사항 발생소재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또는 자격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직권에 따라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한 후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할권이 있는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다시 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 직상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관할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두개 이상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동일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부서가 관할한다.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 직상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관할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아니할 시 공공이익 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행정관리 사항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부서는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즉시 관할권이 있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생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회피를 명하여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서면 형식으로 회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근친 관계인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근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인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의 회피는 해당 집행인력을 파견하여 법 집행 업무에 투입시킨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법 집행 업무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회피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단체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회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 집행 행위를 무단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안전생산 행정허가 절차  제1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반 제출서류 목록과 신청서 작성 견본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실시하는 업무 현장에 공지판, 전자 계시판을 설치하거나 공시 정보와 자료를 본 부서의 전문 장소에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대중이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허가 연합처리, 집중처리 현장에 공시한다.  (3) 본 부서의 공식 사이트에 공시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성실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가 제출하는 신청서류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내에 설치된 두개 이상의 기구가 안전생산 행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기구를 확정하여 통일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고 안전생산 행정허가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 대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위임사항과 대리인의 권한이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안전생산 행정허가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허가 결정을 취소, 변경,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행정허가 조건을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 신청인은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청서와 법정(法定) 서류•자료를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서신,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 방식으로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접수.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초보 심사를 실시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접수하고 서면증빙을 발행한다. 신청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바로 고지하거나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통보서를 발행하여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심사.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여 서면회답을 확보하여야 한다.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法定)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당해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두명 이상의 법 집행인력을 배정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정.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결정한 경우 허가기관은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비준문서를 발급, 송달하여야 한다. 불허가를 결정한 경우 허가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가진 법정(法定) 권리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시험성적, 평가결과, 검사•검측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취득한 후 법에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관련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생산 행정허가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갱신신청서 및 규정된 신청서류•자료를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생산허가 갱신 신청과 더불어 변경 신청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갱신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부서 또는 그의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행정허가 회수 또는 취소에 해당되는 법정(法定)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회수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취득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갱신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회수, 취소당한 경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안전생산허가를 말소처리하여야 하며 언론매체 또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생산 행정처벌 절차  제1절 간이절차  제25조 안전생산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법정(法定)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에게 5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산경영업체에게는 1,000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을 내린다.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이 최소 두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처벌(현장)결정서, 행정처벌 결정 시 의거한 사실, 이유와 근거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하고 당사자 진술•해명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행정처벌결정서를 현장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당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행정처벌 결정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5일 내에 소속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외진 지역, 수변 지역, 교통 불편 지역 등 지리적인 사정으로 지정 은행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요구하에 현장에서 바로 과징금을 수취할 수 있다. 단,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작발부한 과징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과징금 수취일로부터 2일 내에 소속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상납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2일 내에 과징금을 지정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2절 일반절차  제26조 일반절차는 간이절차에 따라 내린 행정처벌 이외의 기타 행정처벌 사건에 적용되며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입건.  초보 조사 결과 안전생산 법률•법규 및 규장 위반 혐의가 있는 생산경영업체의 행위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입건하고 입건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5일 내에 입건 수속을 보충 처리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① 사건 조사 및 증거 수집은 최소 2명의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이 담당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문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원시증빙을 수집, 확보하여 증거로 삼아야 한다. 원시증빙 확보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본에 "대조 확인 결과 원본과 일치하다"는 문구, 제공인, 발행인, 채집시간 및 원시증빙 보관업체와 그 주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증거를 제공한 생산경영업체가 날인하여야 한다. 자영업이고 도장이 없는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자영업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안전생산법 징행인력은 샘플 추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에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 절차를 거쳐 보관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⑤ 조사 및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사건을 담당한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처리의견과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담당 기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며 검토를 마친 후 소속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3) 사건 심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사건심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절차를 적용하는 안전생산 행정처벌 사건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법제기구가 사건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사건을 담당한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심리 의견을 근거로 사건처리승인신청표를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본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행정처벌 고지.  심사를 거쳐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건의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 시 의거한 사실, 이유, 근거, 내릴 예정인 행정처벌 결정, 당사자의 진술권과 해명권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 청문권 고지  청문회 소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청문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 있음을 고지하고 <청문권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6)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 청취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함에 있어 법률•법규에 규정된 가능한 방식을 취하는 외에 원칙상 서면증거 증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서면 자료가 결여된 경우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당사자진술•해명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행정처벌 결정.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 결과 별로 각각 아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위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②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위법 사실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③ 위법행위가 범죄 구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심각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생산•조업정지 및 정돈, 생산•조업정지, 건설 정지, 시공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종사자격 또는 직종자격증서를 취소하거나 5만위안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 5만위안 이상을 몰수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들이 단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행정처벌 결정의 송달.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7일 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 또는 기타 법정(法定) 피송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 시 반드시 송달 수령증이 있어야 하며 피송달인이 송달 수령증에 수령한 날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① 송달 시 피송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피송달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부재 시 피송달인과 동거 중인 성년 가족에게 교부하여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수령증의 비고란에 피송달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 피송달인이 법인이거나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의 법정대표인,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조직의 수령 담당자가 수령하고 수령 확인 서명을 하며 피송달인이 수령인을 지정하였거나 대리인에게 수령을 위임한 경우 지정수령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확인 서명을 하고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상황을 적어야 한다.  ② 직접 송달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현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위임하여 대신 송달하도록 할 수 있다. 대신 송달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문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송달인에게 교부하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동거 중인 성년 가족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基層) 조직 또는 당사자 직장의 대표를 현장으로 요청하여 정황을 설명한 후 <행정처벌 결정서>의 송달 수령증에 수령을 거부한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송달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의 주소에 둘 수 있으며; <행정처벌 결정서>를 피송달인의 주소에 두고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송달 과정을 기록한 경우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피송달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상술한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송달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송달의 경우 사건 기록에 그 원인과 경과를 적어야 한다.  ⑤ 피송달인의 동의를 득한 후 팩스, 이메일 등 피송달인이 수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송달 방식을 취 할 수 있다.  ⑥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송달 방식.  (9)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일부분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심사비준 문서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일 3%의 요율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가산금의 금액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차압, 압수한 시설, 설비, 기자재를 경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과징금을 충당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등 조치를 신청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행정처벌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10) 비안(備案).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5만위안 이상의 과징금 부과, 5만위안 이상의 불법소득 몰수, 생산•조업 정지 명령, 건설 정지 명령, 시공 정지 명령, 생산•조업 정지와 정돈 명령, 관련 자격증서•직종증명서를 취소하거나 허가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맡긴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내에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11) 사건 종결.  행정처벌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객관적인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동의를 득한 후 연장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 집행이 종료된 후 사건종결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12) 사건 기록의 보관.  안전생산 행정처벌 사건이 종결된 후 안전생산법 집행문서의 시간 순서와 법 집행 절차에 따라 정렬하여 사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청문 절차  제27조 당사자의 청문회 소집 요구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고지한 후 3일 내에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당사자가 청문회 소집 요구를 제기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서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보받은 시간에 청문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를 조직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는 1회에 한해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통보받은 시간에 청문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청문회 참가자는 청문회 진행자, 청문원, 사건 조사 담당자, 당사자, 서기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1-2명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문회 진행자, 청문원, 서기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지정한 해당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30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31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서기가 청문회 회의장 기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한다. 청문회 진행자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청문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회피 신청 여부를 묻는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청문회 진행자가 청문회의 잠시 중지를 선포한다.  (2)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내릴 예정인 행정처벌의 내용과 법률 근거를 설명한다.  (3)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법률 등을 진술하고 해명하며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4) 청문회 진행자는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건 조사 담당자, 증인을 신문한다.  (5) 사건 조사 담당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변론 및 대질신문을 한다.  (6)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최종진술을 한다.  (7) 청문회 진행자가 청문회가 끝났음을 선포한다.  청문회 기록은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서명 및 날인한다.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청문회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증거 수집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2)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청문회를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청문회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청문회 소집 요구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받은 시간에 청문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청문회 진행자의 동의 없이 중도 퇴장한 경우;  (3) 내릴 예정인 행정처벌 결정이 이미 변경되어 청문회 절차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  제34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진행 상황에 근거하여 청문회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의견을 도출한 후 청문회기록을 첨부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청문회가 끝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 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제5장 안전생산 행정강제 절차  제36조 안전생산 행정강제의 유형:  (1) 안전생산 보장의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는 시설, 설비, 기자재와 불법으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한 위험물을 차압하거나 압수하며 위험물의 불법 생산, 저장, 사용, 경영에 사용된 작업현장을 폐쇄한다.  (2) 이제독(易制毒)화학품과 연관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관련 증거자료 및 불법 물품을 압수한다.  (3) 위험화학품의 불법 생산, 저장, 사용, 경영에 사용된 장소를 폐쇄하고 불법으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한 위험화학품 및 위험화학품의 불법 생산과 사용에 이용된 원재료 및 설비•공구를 압수한다.  (4) 관련 부서, 업체에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다.  (5) 직업병 피해 사고를 초래하였거나 직업병 피해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재료 및 설비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6) 과징금 가산금을 부과한다.  (7)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안전생산 행정강제.  제37조 안전생산 행정강제는 법률•법규에 정해진 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강제 조치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생산 행정강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력이 실시하며 기타 인력이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안전생산 행정강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으로 즉석에서 안전생산 행정강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법 집행인력은 24시간 내에 안전생산 관리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보충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가 안전생산 행정강제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안전생산 행정강제의 실시는 다음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두명 이상의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이 현장에 출두하여 실시하며 현장에서 법 집행 증명서 및 관련 결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시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현장 출두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안전생산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이유와 근거 및 법에 정해진 당사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당사자의 진술 및 해명을 청취한다.  (5) 현장 기록을 작성한다.  (6) 현장 기록은 당사자와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거절하는 경우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7)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증인과 법 집행인력이 현장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8)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절차.  제40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잠재적 중대 사고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업체에 대하여 생산•조업 정지, 시공 정지, 관련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 정지 결정을 내린 경우 생산경영업체는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업체가 집행을 거절하고 생산안전 사고의 현실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본 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체에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업체의 결정 이행을 강행할 수 있다. 통보는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함에 있어 생산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전력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기 24시간 전에 생산경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법에 근거하여 관련 업체에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등 조치를 통보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결정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경영업체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인 성명;  (2)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하는 이유, 근거 및 기한;  (3)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구역 범위;  (4)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칭, 도장 및 일자.  생산경영업체에 발송하는 통보서에는 전항에 규정한 내용 이외에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업체가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 사고 위험을 제거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전력 공급 중단, 민용 폭발물 공급 중단 등 조치의 해제를 결정하고 관련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과징금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과징금 가산 표준을 고지한다.  (2) 당사자가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 납부 <최고장>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하고 진술•해명기록을 작성한다.  (4) <과징금 가산금 부과 결정서>를 제작 및 송달한다.  제44조 당사자가 여전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5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최고장>을 송달하여 관련 과징금 납부, 행정결정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를 독촉한다.  (2) 과징금 납부 <최고장> 송달 10일 후 법 집행기관이 행정재심사 신청기한, 행정소송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소재지의 기층(基層)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강제집행 신청서;  ② 행정결정서 및 결정 시 의거한 사실, 이유 및 근거;  ③ 당사자의 의견 및 행정기관의 최고 상황;  ④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  ⑤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자료.  강제집행 신청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책임자가 서명하고 본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즉시 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4)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의 불접수 또는 불집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 15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4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법률•법규에 의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조직과 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관련 법률•법규•규장과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안전생산법 집행 직권을 이행한다.  제46조 성(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  | **国家安全监管总局关于印发《安全生产执法程序规定》的通知**  安监总政法〔2016〕72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安全生产监督管理局：  为进一步规范安全生产执法行为，保障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国家安全监管总局制定了《安全生产执法程序规定》，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国家安全监管总局  2016年7月15日  安全生产执法程序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安全生产执法行为，保障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安全生产执法，是指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和规章，在履行安全生产（含职业卫生，下同）监督管理职权中，作出的行政许可、行政处罚、行政强制等行政行为。  第三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安全生产执法信息公示制度，将执法的依据、程序和结果等事项向当事人公开，并在本单位官方网站上向社会公示，接受社会公众的监督；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的除外。  第四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公正行使安全生产执法职权。行使裁量权应当符合立法目的和原则，采取的措施和手段应当合法、必要、适当；可以采取多种措施和手段实现执法目的的，应当选择有利于保护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的措施和手段。  第五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在安全生产执法过程中应当依法及时告知当事人、利害关系人相关的执法事实、理由、依据、法定权利和义务。  当事人对安全生产执法，依法享有陈述权、申辩权；有权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六条 安全生产执法采用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统一制定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行政执法文书》格式。  第二章　安全生产执法主体和管辖  第七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内设机构或者派出机构对外行使执法职权时，应当以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名义作出行政决定，并由该部门承担法律责任。  第八条 依法受委托的机关或者组织在委托的范围内，以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名义行使安全生产执法职权，由此所产生的后果由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承担法律责任。  第九条 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与受委托的机关或者组织之间应当签订委托书。委托书应当载明委托依据、委托事项、权限、期限、双方权利和义务、法律责任等事项。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受委托的机关或者组织应当将委托的事项、权限、期限向社会公开。  第十条 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对受委托机关或者组织办理受委托事项的行为进行指导、监督。  受委托的机关或者组织应当自行完成受委托的事项，不得将受委托的事项再委托给其他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  有下列情形之一的，委托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解除委托，并向社会公布：  （一）委托期限届满的；  （二）受委托行政机关或者组织超越、滥用行政职权或者不履行行政职责的；  （三）受委托行政机关或者组织不再具备履行相应职责的条件的；  （四）应当解除委托的其他情形。  第十一条 法律、法规和规章对安全生产执法地域管辖未作明确规定的，由行政管理事项发生地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管辖，但涉及个人资格许可事项的，由行政管理事项发生所在地或者实施资格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管辖。  第十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职权启动执法程序后，认为不属于自己管辖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同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并通知当事人；受移送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于不属于自己管辖的，不得再行移送，应当报请其共同的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指定管辖。  第十三条 两个以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同一事项都有管辖权的，由最先受理的予以管辖；发生管辖权争议的，由其共同的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指定管辖。情况紧急、不及时采取措施将对公共利益或者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造成重大损害的，行政管理事项发生地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进行必要处理，并立即通知有管辖权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第十四条 开展安全生产执法时，有下列情形之一的，安全生产执法人员应当自行申请回避；本人未申请回避的，本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其回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以书面形式提出回避申请：  （一）本人是本案的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的；  （二）与本人或者本人近亲属有直接利害关系的；  （三）与本人有其他利害关系，可能影响公正执行公务的。  安全生产执法人员的回避，由指派其进行执法工作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负责人决定。实施执法工作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的回避，由该部门负责人集体讨论决定。回避决定作出之前，安全生产执法人员不得擅自停止执法行为。  第三章 安全生产行政许可程序  第十五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将本部门依法实施的行政许可事项、依据、条件、数量、程序、期限以及需要提交的全部材料的目录和申请书示范文本等进行公示。公示应当采取下列方式：  （一）在实施许可的办公场所设置公示栏、电子显示屏或者将公示信息资料集中在本部门专门场所供公众查阅；  （二）在联合办理、集中办理行政许可的场所公示；  （三）在本部门官方网站上公示。  第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申请安全生产行政许可的，应当依法向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  第十七条 申请人申请安全生产行政许可，应当如实向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交有关材料和反映真实情况，并对其申请材料实质内容的真实性负责。  第十八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有多个内设机构办理安全生产行政许可事项的，应当确定一个机构统一受理申请人的申请，统一送达安全生产行政许可决定。  第十九条 申请人可以委托代理人代为提出安全生产行政许可申请，但依法应当由申请人本人申请的除外。  代理人代为提出申请的，应当出具载明委托事项和代理人权限的授权委托书，并出示能证明其身份的证件。  第二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因安全生产行政许可行为取得的正当权益受法律保护。非因法定事由并经法定程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不得撤销、变更、注销已经生效的行政许可决定。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不得增加法律、法规规定以外的其他行政许可条件。  第二十一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实施安全生产行政许可，应当按照以下程序办理：  （一）申请。申请人向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交申请书和法定的文件资料，也可以按规定通过信函、传真、互联网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安全生产行政许可申请；  （二）受理。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按照规定进行初步审查，对符合条件的申请予以受理并出具书面凭证；对申请文件、资料不齐全或者不符合要求的，应当当场告知或者在收到申请文件、资料之日起5个工作日内出具补正通知书，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对不符合条件的，不予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理由；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三）审查。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申请材料进行书面审查，按照规定，需要征求有关部门意见的，应当书面征求有关部门意见，并得到书面回复；属于法定听证情形的，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举行听证；发现行政许可事项直接关系他人重大利益的，应当告知该利害关系人。需要到现场核查的，应当指派两名以上执法人员实施核查，并提交现场核查报告；  （四）作出决定。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在规定的时间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书面决定。对决定许可的，许可机关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向申请人颁发、送达许可证件或者批准文件；对决定不予许可的，许可机关应当说明理由，并告知申请人享有的法定权利。  依照法律、法规规定实施安全生产行政许可，应当根据考试成绩、考核结果、检验、检测结果作出行政许可决定的，从其规定。  第二十二条 已经取得安全生产行政许可，因法定事由，有关许可事项需要变更的，应当按照有关规定向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变更申请，并提交相关文件、资料。实施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进行审查，办理变更手续。  第二十三条 需要申请安全生产行政许可延期的，应当在规定的期限内，向作出安全生产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延期申请，并提交延期申请书及规定的申请文件、资料。  提出安全生产许可延期申请时，可以同时提出变更申请，并按有关规定向作出安全生产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交相关文件、资料。  作出安全生产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受理延期申请后，应当依照有关规定，对延期申请进行审查，作出是否准予延期的决定；作出安全生产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管管理部门逾期未作出决定的，视为准予延期。  第二十四条 作出安全生产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其上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发现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属于吊销或者撤销法定情形的，应当依法吊销或者撤销该行政许可。  已经取得安全生产行政许可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存在有效期届满未按规定提出申请延期、未被批准延期或者被依法吊销、撤销的，作出行政许可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注销该安全生产许可，并在新闻媒体或者本机关网站上发布公告。  第四章 安全生产行政处罚程序  第一节 简易程序  第二十五条 安全生产违法事实确凿并有法定依据，对个人处以50元以下罚款、对生产经营单位处以1千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行政处罚的，安全生产执法人员可以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适用简易程序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的，应当遵循以下程序：  （一）安全生产执法人员不得少于两名，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有效的执法证件，表明身份；  （二）行政处罚（当场）决定书，告知当事人作出行政处罚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  （三）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并制作当事人陈述申辩笔录；  （四）将行政处罚决定书当场交付当事人，并由当事人签字确认；  （五）及时报告行政处罚决定，并在5日内报所属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  安全生产执法人员对在边远、水上、交通不便地区，当事人向指定银行缴纳罚款确有困难，经当事人提出，可以当场收缴罚款，但应当出具省级人民政府财政部门统一制发的罚款收据，并自收缴罚款之日起2日内，交至所属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在2日内将罚款缴付指定的银行。  第二节 一般程序  第二十六条 一般程序适用于依据简易程序作出的行政处罚以外的其他行政处罚案件，遵循以下程序：  （一）立案。  对经初步调查认为生产经营单位涉嫌违反安全生产法律法规和规章的行为、依法应给予行政处罚、属于本部门管辖范围的，应当予以立案，并填写立案审批表。对确需立即查处的安全生产违法行为，可以先行调查取证，并在5日内补办立案手续。  （二）调查取证。  1.进行案件调查取证时，安全生产执法人员不得少于两名，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有效的执法证件，表明身份；  2.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询问时，应制作询问笔录；  3.安全生产执法人员应当全面、客观、公正地进行调查，收集、调取与案件有关的原始凭证作为证据。调取原始凭证确有困难的，可以复制，复制件应当注明“经核对与原件无异”的字样、采集人、出具人、采集时间和原始凭证存放的单位及其处所，并由出具证据的生产经营单位盖章；个体经营且没有印章的生产经营单位，应当由该个体经营者签名。  4.安全生产执法人员在收集证据时，可以采取抽样取证的方法；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经本部门负责人批准，可以先行登记保存，并应当在7日内依法作出处理决定。  5.调查取证结束后，负责承办案件的安全生产执法人员拟定处理意见，编写案件调查报告，并交案件承办机构负责人审核，审核后报所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审批。  （三）案件审理。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案件审理制度，对适用一般程序的安全生产行政处罚案件应当由内设的法制机构进行案件的合法性审查。  负责承办案件的安全生产执法人员应当根据审理意见，填写案件处理呈批表，连同有关证据材料一并报本部门负责人审批。  （四）行政处罚告知。  经审批，应当给予行政处罚的案件，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在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作出行政处罚决定的事实、理由、依据、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当事人享有的陈述和申辩权利等，并向当事人送达《行政处罚告知书》。  （五）听证告知。  符合听证条件的，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并向当事人送达《听证告知书》。  （六）听取当事人陈述申辩。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听取当事人陈述申辩，除法律法规规定可以采用的方式外，原则上应当形成书面证据证明，没有当事人书面材料的，安全生产执法人员应当制作当事人陈述申辩笔录。  （七）作出行政处罚决定的执行。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对案件调查结果进行审查，并根据不同情况，分别作出以下决定：  1.依法应受行政处罚的违法行为的，根据情节轻重及具体情况，作出行政处罚决定；  2.违法行为轻微，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不予行政处罚；违法事实不能成立，不得给予行政处罚；  3.违法行为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对严重安全生产违法行为给予责令停产停业整顿、责令停产停业、责令停止建设、责令停止施工、吊销有关许可证、撤销有关执业资格或者岗位证书、5万元以上罚款、没收违法所得5万元以上的行政处罚的，应当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负责人集体讨论决定。  （八）行政处罚决定送达。  《行政处罚决定书》应当当场交付当事人；当事人不在场的，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在7日内，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将《行政处罚决定书》送达当事人或者其他的法定受送达人。送达必须有送达回执，由受送达人在送达回执上注明收到日期，签名或者盖章。具体可以采用下列方式：  1. 送达应当直接送交受送达人。受送达人是个人的，本人不在时，交他的同住成年家属签收，并在《行政处罚决定书》送达回执的备注栏内注明与受送达人的关系；受送达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应当由法人的法定代表人、其他组织的主要负责人或者该法人、组织负责收件的人签收；受送达人指定代收人或者委托代理人的，交代收人或者委托代理人签收并注明受当事人委托的情况；  2.直接送达确有困难的，可以挂号邮寄送达，也可以委托当地安全监督管理部门代为送达，代为送达的安全监督管理部门收到文书后，应当及时交受送达人签收；  3.当事人或者他的同住成年家属拒绝接收的，送达人可以邀请有关基层组织或者所在单位的代表到场，说明情况，在《行政处罚决定书》送达回执上记明拒收的事由和日期，由送达人、见证人签名或者盖章，将行政处罚决定书留在当事人的住所；也可以把《行政处罚决定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并采用拍照、录像等方式记录送达过程，即视为送达；  4.受送达人下落不明，或者用以上方式无法送达的，可以公告送达，自公告发布之日起经过60日，即视为送达。公告送达，应当在案卷中注明原因和经过；  5.经受送达人同意，还可采用传真、电子邮件等能够确认其收悉的方式送达；  6.法律、法规规定的其他送达方式。  （九）行政处罚决定的执行。  当事人应当在行政处罚决定的期限内，予以履行。当事人按时全部履行处罚决定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该保留相应的凭证；行政处罚部分履行的，应有相应的审批文书；当事人逾期不履行的，作出行政处罚决定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按每日以罚款数额的３％加处罚款，但加处罚款的数额不得超出原罚款的数额；根据法律规定，将查封、扣押的设施、设备、器材拍卖所得价款抵缴罚款和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等措施。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行政处罚不停止执行，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十）备案。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实施5万元以上罚款、没收违法所得5万元以上、责令停产停业、责令停止建设、责令停止施工、责令停产停业整顿、撤销有关资格、岗位证书或者吊销有关许可证的行政处罚的，按有关规定报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  对上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交办的案件给予行政处罚的，由决定行政处罚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自作出行政处罚决定之日起10日内报上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  （十一）结案。  行政处罚案件应当自立案之日起30日内作出行政处罚决定；由于客观原因不能完成的，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同意，可以延长，但不得超过90日；特殊情况需进一步延长的，应当经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批准，可延长至180日。  案件执行完毕后，应填写结案审批表，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后结案。  （十二）归档。  安全生产行政处罚案件结案后，应按安全生产执法文书的时间顺序和执法程序排序进行归档。  第三节 听证程序  第二十七条 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告知后3日内以书面方式提出；逾期未提出申请的，视为放弃听证权利。  第二十八条 当事人提出听证要求后，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在收到书面申请之日起15日内举行听证会，并在举行听证会的7日前，通知当事人举行听证的时间、地点。  当事人应当按期参加听证。当事人有正当理由要求延期的，经组织听证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期1次；当事人未按期参加听证，并且未事先说明理由的，视为放弃听证权利。  第二十九条 听证参加人由听证主持人、听证员、案件调查人员、当事人、书记员组成。  当事人可以委托1至2名代理人参加听证，并按规定提交委托书。  听证主持人、听证员、书记员应当由组织听证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指定的非本案调查人员担任。  第三十条 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听证应当公开举行。  第三十一条 听证按照下列程序进行：  （一）书记员宣布听证会场纪律、当事人的权利和义务。听证主持人宣布案由，核实听证参加人名单，询问当事人是否申请回避。当事人提出回避申请的，由听证主持人宣布暂停听证；  （二）案件调查人员提出当事人的违法事实、出示证据，说明拟作出的行政处罚的内容及法律依据；  （三）当事人或者其委托代理人对案件的事实、证据、适用的法律等进行陈述和申辩，提交新的证据材料；  （四）听证主持人就案件的有关问题向当事人、案件调查人员、证人询问；  （五）案件调查人员、当事人或者其委托代理人相互辩论与质证；  （六）当事人或者其委托代理人作最后陈述；  （七）听证主持人宣布听证结束。  听证笔录应当当场交当事人核对无误后签名或者盖章。  第三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中止听证：  （一）需要重新调查取证的；  （二）需要通知新证人到场作证的；  （三）因不可抗力无法继续进行听证的。  第三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听证：  （一）当事人撤回听证要求的；  （二）当事人无正当理由不按时参加听证，或者未经听证主持人允许提前退席的；  （三）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已经变更，不适用听证程序的。  第三十四条 听证结束后，听证主持人应当依据听证情况，形成听证会报告书，提出处理意见并附听证笔录报送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  第三十五条 听证结束后，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本法第二十六条第七项的规定，作出决定。  第五章 安全生产行政强制程序  第三十六条 安全生产行政强制的种类：  （一）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设施、设备、器材以及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的危险物品予以查封或者扣押，对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危险物品的作业场所予以查封；  （二）临时查封易制毒化学品有关场所、扣押相关的证据材料和违法物品；  （三）查封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危险化学品的场所，扣押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的危险化学品以及用于违法生产、使用危险化学品的原材料、设备工具；  （四）通知有关部门、单位强制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  （五）封存造成职业病危害事故或者可能导致职业病危害事故发生的材料和设备；  （六）加处罚款；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安全生产行政强制。  第三十七条 安全生产行政强制应当在法律、法规规定的职权范围内实施。安全生产行政强制措施权不得委托。  安全生产行政强制应当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具备资格的执法人员实施，其他人员不得实施。  第三十八条 实施安全生产行政强制，应当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报告并经批准；情况紧急，需要当场实施安全生产行政强制的，执法人员应当在24小时内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报告，并补办批准手续。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安全生产行政强制的，应当立即解除。  第三十九条 实施安全生产行政强制应当符合下列规定：  （一）应有两名以上安全生产执法人员到场实施，现场出示执法证件及相关决定；  （二）实施前应当通知当事人到场；  （三）当场告知当事人采取安全生产行政强制的理由、依据以及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救济途径；  （四）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  （五）制作现场笔录；  （六）现场笔录由当事人和安全生产执法人员签名或者盖章，当事人拒绝的，在笔录中予以注明；  （七）当事人不到场的，邀请见证人到场，由见证人和执法人员在现场笔录上签名或者盖章；  （八）法律、法规规定的其他程序。  第四十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法对存在重大事故隐患的生产经营单位作出停产停业、停止施工、停止使用相关设施或者设备的决定，生产经营单位应当依法执行，及时消除事故隐患。生产经营单位拒不执行，有发生生产安全事故的现实危险的，在保证安全的前提下，经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采取通知有关单位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等措施，强制生产经营单位履行决定，通知应当采用书面形式。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采取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措施，除有危及生产安全的紧急情形外，停止供电措施应当提前二十四小时通知生产经营单位。  第四十一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法通知有关单位采取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等措施决定书的内容应当包括：  （一）生产经营单位名称、地址及法定代表人姓名；  （二）采取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等措施的理由、依据和期限；  （三）停止供电的区域范围；  （四）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名称、印章和日期。  对生产经营单位的通知除包含前款规定的内容外，还应当载明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  第四十二条 生产经营单位依法履行行政决定、采取相应措施消除事故隐患的，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复核通过，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作出解除停止供电、停止供应民用爆炸物品等措施并书面通知有关单位。  第四十三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适用加处罚款情形的，按照下列规定执行：  （一）在《行政处罚决定书》中，告知加处罚款的标准；  （二）当事人在决定期限内不履行义务，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规定，制作并向当事人送达缴纳罚款《催告书》；  （三）听取当事人陈述、申辩，并制作陈述申辩笔录；  （四）制作并送达《加处罚款决定书》。  第四十四条 当事人仍不履行罚款处罚决定，又不提起行政复议、行政诉讼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按照下列规定，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一）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第五十四条向当事人送达《催告书》，催促当事人履行有关缴纳罚款、履行行政决定等义务；  （二）缴纳罚款《催告书》送达10日后，由执法机关自提起行政复议、行政诉讼期限届满之日起3个月内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所在地基层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执行对象是不动产的，向不动产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并提交下列材料：  1.强制执行申请书；  2.行政决定书及作出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  3.当事人的意见及行政机关催告情况；  4.申请强制执行标的情况；  5.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强制执行申请书应当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人签名，加盖本部门的印章，并注明日期。  （三）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第五十九条规定，因情况紧急，为保障公共安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立即执行；  （四）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人民法院不予受理或者不予执行的裁定有异议的，可以自收到裁定之日起在15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  第六章　附　则  第四十五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以及法律、法规授权的机关或者组织和依法受委托的机关或者组织履行安全生产执法职权，按照有关法律、法规、规章和本规定的程序办理。  第四十六条 省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规定制定相关实施细则。 |